

R&D지원

공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I. 일반 바우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적용
-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차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차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지원규모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5개)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공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20
기술 지원 (4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통망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 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20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 | | |
|---------------------|---------------------------|
| ① 1차 금속 제조업 | ⑥ 음료 제조업 |
|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차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차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지원규모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필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탄소저감 목표 설정 등	50
기술 지원 (선택)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구분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기술 지원 (4개)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로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제품 시험 및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 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디자이너개발, B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 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50%	50%

II.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기술 지원 (선택)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50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보조율)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III.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지원대상

- [별첨7]*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해당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차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차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진로제시), 사건 종료시까지(회생)

■ 지원규모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진로 제시	기초진로제시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
	회생조기진입		
	재창업	재창업 지원 기업의 재기 성공을 위한 전략 제시	
	사업정리	전문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등) 사업정리 지원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회생	Pre-회생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 지원	3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
	개인회생컨설팅		24
	워크아웃컨설팅	워크아웃 기업의 실사·자구계획서 작성 비용 등을 지원	30

■ 문의처

- 혁신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 (mssmiv.com)
- 일반 및 탄소 바우처 (☎ (국번없이) 1357, 1811-3655, 055-751-9847)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 회생컨설팅 (☎ 02-3211-5611, 055-751-9624, 9627)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